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3
----------	------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4월 4일, 장홍순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5일
3. 상정일자 :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6월 16일 상정·질의응답 (심사 보류)】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 (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장홍순)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이 상이한 실정임.

-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68명, 2014년 기준)보다 낮은 1.21명(2014년 기준)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비용 지원의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 개요

-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이 상이한 실정인 바, 이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 밝히고 있음.

2.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상의 제안이유를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각 자치구별로 자체 구비사업으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이를 위해 개정안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함.

(개정안) 제4조의2(출산 비용 지원)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상기의 제안이유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언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개정안 제4조의2에 제시된 내용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또한 규정 내용상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고자 하는지’ 에 대한 내용도 불명확 함.
- 만약에,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출산장려를 위한 포괄적 수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면, 현행 조례의 제4조제2호 (아래 내용)에 그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현행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따라서,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구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출산장려금’ 제도¹⁾를 시비 사업으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제도의 격차 경향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 격차를 재정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자치구별 정책의지가 포함된 편차를 서울시에서 이처럼 개별 사업단위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소요 재원 고려 포함)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가 갖는 정책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1) 참고로,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제도는 2006년(최초 양천구, 가장 최근 마포구 2011년 도입) 이래 자치구별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액 구비사업으로 시행중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예. 출산이전 의무거주 기간 등에 대한 요건 등) 및 지원금액에서 자치구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현재 2017년 현재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관내 3개 자치구뿐이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치구 지원 평균 금액은 ‘첫째’ 아이의 경우 10만원, ‘둘째’의 경우 30만 4천원, ‘셋째’의 경우 50만 9천원, ‘넷째’의 경우 113만 6천원, ‘다섯째’ 이상의 경우 154만 4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별첨자료: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및 관내 자치구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통계 자료 참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자료】

〈표. 1〉 자치구별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현황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지원대상	'17 재정 자립도 (%)	'15 합계출산율 (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1	종로구	2008		500	1,000	1,000	1,000	부모가 10개월 이상 거주(미만 시 10개월 지난 시점에 지원)	50.8	0.813
2	중구	2007		500	1,000	3,000	3,000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실제 거주(미만 시 12개월 지난 시점에 지원)	58.4	0.946
3	용산구	2009	100	200	500	1,000	1,000	부모가 1년 이상 거주(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42.4	1.005
4	성동구	2007		200	5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미만 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34.5	1.095
5	광진구	2008		300	500	1,000	5,000	제한 없음(출생일 현재 광진구 거주자)	28.1	0.903
6	동대문구	2008		300	500	1,000	1,000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동대문구 거주할 것	27.2	0.960
7	중랑구	2008		500	1,000	2,000	2,000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미만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20.6	1.051
8	성북구	2009		300	5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원)	21.8	0.991
9	강북구	2008		300	600	600	600	강북구에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할 경우(출생일 기준 3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18.8	0.922
10	도봉구	2008		300	500	1,000	1,000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경과 후 지급)	19.8	1.010
11	노원구	2008		200	500	1,000	1,000	부모가 3개월 이상 거주.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출생후 1년 이내 신청)	17.8	1.096
12	은평구	2009		250	350	500	1,000	신생아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양육 지원신청일까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9.0	1.003
13	서대문구	2007	100	200	500	500	500	서대문구를 첫주소로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26.6	0.913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지원대상	'17 재정 자립도 (%)	'15 합계출산율 (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14	마포구	2011	100	150	300	1,000	5,000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32.9	0.986
15	양천구	2006		500	700	1,000	2,000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양천구 거주	28.5	1.034
16	강서구	2008		100	200	300	500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거주	21.6	1.129
17	구로구	2010		300	600	2,000	2,000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미만 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24.0	1.169
18	금천구	2008		500	7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미만 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27.2	1.086
19	영등포구	2008		200	500	1,000	1,000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미만 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42.0	1.085
20	동작구	2009		100	500	1,000	1,000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27.2	1.012
21	관악구	2008		200	300	500	1,000	신생아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관악구 거주	20.6	0.833
22	서초구	2007		500	1,000	1,000	1,000	신생아 출생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52.5	1.012
23	강남구	2007		500	1,000	3,000	3,000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시점에 지원	58.2	0.857
24	송파구	2009		300	500	1,000	1,000	부모가 6개월 이상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42.8	1.008
25	강동구	2009		200	500	1,000	1,000	부모가 1년 이상 거주(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30.1	1.036

(※자료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

<표 2> 관내 자치구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통계

(단위: 천원)

구분	지원 자치구	지원 자치구 평균액	최소 지원액 (자치구)	최대 지원액 (자치구)
자 녀 수	첫째 (용산, 서대문, 마포)	3개 100	100	100 (3개 자치구 동일)
	둘째 25개 자치구 모두	304	100 (강서, 동작)	500 (종로, 중구, 중랑, 양천, 금천, 서초, 강남)
	셋째 25개 자치구 모두	509	200 (강서)	1,000 (종로, 중구, 중랑, 서초, 강남)
	넷째 25개 자치구 모두	1,136	300 (강서)	3,000 (중구, 강남)
	다섯 째 25개 자치구 모두	1,544	500 (서대문, 강서)	3,000 (중구, 강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1713
----------	------------

제안일: 2017년 8월 30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축하를 위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p><u>제4조의 2(출산 비용 지원)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수정안
<p>(신설)</p>	<p><u>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u> <u>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u> <u>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u> <u>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u> <u>있다.</u></p>